졸업예정자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 안내

1. 근거

가. 학칙 제49조의2(학사학위 취득유예)

나. 학사운영규정 제111조의2(학사학위 취득유예)

2. 신청 대상

2023년 전기(2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학점 및 졸업논문(시험), 중원졸업인증제 이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 중 공인전문능력과정 자격취득, 취업준비 및 개인 역량강화 등을 위하여 학사학위 취득유예(졸업 연기)를 희망하는 학생

3. 학사학위 취득유예 기간: 최대 2년(1년마다 신청하여야 함)

4. 신청기간: 2023.01.06.~ 01.11.까지

5. 제출서류

가.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서 1부

나. 성적증명서 1부

다. 2022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수강내역 1부(해당자만)
(통합정보시스템-정보광장-수강-수강내역조회/출력)

라. 제출처: 단과대학 행정팀(8. 각 단과대학 행정팀 연락처 참조)

6. 주의사항

가. '학사학위 취득유예'와 '수료'의 차이점

구 분	학점 이수	논문 또는 대체 시험 등	중원졸업인증제(비교과영역, 포트폴리오, SEN-Speaking Test 등)	비 고
졸 업	○	○	○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 가능**
수 료	○	○ or X	○ or X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 불가
졸업불가	X	○ or X	○ or X	

나.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은 1년간 유효하고, 최대 2년 학사학위 취득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1년 후 재신청하여야 함

다. 조기졸업 신청 후 승인을 받은 학생은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 불가

라.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 희망자는 당해 학년도 계절학기 성적을 포함하여 졸업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마. **8학기 이수한 학생 중 졸업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학사학위 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없고, 초과 학기 자로 학기가 연장되어 졸업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바. 졸업학점은 충족되나 졸업논문 및 중원졸업인증제 미이수로 인하여 졸업이 불가할 경우 **수료** 처리되며, **다음 학기에 졸업요건이 충족되어도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 불가**

사. **취업 준비 및 개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한 학생은 별도의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아. **학사학위 취득유예자 중 교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후 학점단위 등록**을 하여야 함

자. 학사학위 취득유예자의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예정일 표기: **매 학기 단위**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차. 학사학위 취득유예자의 중도 졸업: 학사학위 취득유예 기간 중 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학사학위 취득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장 승인을 얻어 단과대학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졸업시기는 2월(전기) 또는 8월(후기)에 한함.

(예: 취득유예 기간인 1년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6개월 만에 졸업하고자 할 경우)

카.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자는 **자퇴 신청 불가**

7. 학사학위 취득유예 제도 신청자 혜택

가. 학사학위 취득유예자는 재적생 신분 유지

나. 학교 도서관, 취창업지원센터, 학생식당 등 재학생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

다.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 가능

8. 각 단과대학 행정팀 연락처(☎ 043-830-내선)

단과대학	학과	연락처	사무실
사회문화대학	스포츠지도학과, 스포츠산업학과, 무예경호학과, 연극영화학과,(경영학과),(법무법학과)	8326	M1 601
	경찰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종교문화재학과, 한국어교육문화학과,군사학과,(아동보육상담학과), (국제통상학과)	8325	
융합과학기술대학	소방방재학과, 융합디자인학과,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8552	M2 704
	의약바이오학과, 의생명과학과, 식품산업학과, 말산업학과, 의료공학과	8553	
	반도체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8554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	8677/8688	i 301
	임상병리학과, 의료뷰티케어학과, AI의료공학과	8673	M2 704
	보건행정학과	8674	
	작업치료학과	8675	
항공대학	스마트운행체학과, 항공정비학과, 항공기계공학과	8478	M1 601
	항공서비스학과	8476	
	항공운항학과	8477	
	융합기계 · 전기전자부품공학과	8953	S 817